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81

발의연월일: 2021. 8. 3.

발 의 자:하영제·서일준·이양수

성일종 · 김태흠 · 박덕흠

조명희 • 이명수 • 권성동

김용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 철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및 인구감소, 구도심의 쇠퇴 등으로 전국적으로 빈집이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의 우려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빈집의 철거를 유인하기위한 직접적이고 일관된 세제혜택이 없음.

또한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어 세금이 늘어나게 되어 빈집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절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4조의2(철거된 빈집의 부속토
	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소
	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
	한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
	의5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명
	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
	우를 포함한다)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